

#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826
------	-----

발의년월일 : 1999. 10. 18.

발 의 자 : 전준호 의원 외 6인

## 1. 제안이유

- 시민에 대한 소비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며,
-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 권익을 신장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는 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사후 구제보장 차원보다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소비자의 7대 기본적 권리를 명시 (안 제3조)
-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의 주체인 안산시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 소비자에 대한 각종 위해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 의뢰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둠.  
(안 제6조 제1항~제3항)

- 시장은 기본생활 필수품에 대하여 가격·수급상황 및 유통실태 등의 정보를 수집, 이의 안정을 도모하며 또한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급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음. (안 제7조)
-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게 하는 상품 즉, 위해물품의 제공 금지사항을 둠. (안 제11조)
- 소비자의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등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소비자 단체의 임무 규정 (안 제17조)
- 소비자단체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 (안 제18조)
- 소비자단체가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물품을 국·공립 시험검사 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험·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정성 등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의 규격·품질·안정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9조)
- 시장이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날부터 10일 이내 소비자에게 처리 상황을 통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함.  
(안 제22조)
-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둠. (안 제25조)

- 소비자 보호정책의 심의,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구제 및 적절한 피해보상의 알선, 조정을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29조)
- 이 조례에 의한 시험·검사나 조사의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지도 및 권고 그리고 공표의뢰 규정을 둠. (안 제26조~제28조)

###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보호법시행령
  -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
  - 오산시소비자보호조례 등 9개 시·군 조례
- 관련조례 시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
  - 일 시 : '99.5.31(월) 오후 3시
  - 장 소 : 안산 YMCA 강당
  - 주 관 : 안산시소비자보호조례 준비위원회
- 재정부담 수반사항에 대한 의견조회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4조
  - 회시결과 : 기획 13130-1878('99.8.5)호로 예산범위내 지원 가능

#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보호법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 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정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 4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를 통하여 사업자가 소비자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조(시의 의무) 시장은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을 위한 노력
5. 기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 제2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제 6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권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판매 금지를 명할 것을 경기도지사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 7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 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수급상황 및 유통실태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기관, 사업자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은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 8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 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 조절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보호 교육 등)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정보의 제공 등 교육 및 계몽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위해물품의 제공금지)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성분·가격·용도·사용방법·제조년월일·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①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그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 및 시의 소비자보호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 행위를 하거나 불량계량기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계량의 적정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장 소비자단체의 임무 및 육성지원

제17조(소비자단체의 임무)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시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소비자에 대한 교육·계몽·캠페인
5. 소비자의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및 정보의 제공

②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험·검사의뢰 및 시설 설치) ①시장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험·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정성 등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정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20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화·전신·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장 및 소비자단체는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의 검사·제출요구) ①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립 또는 공립 시험검사 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시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소비자 피해 처리기한) 시장이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접수된 사안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4조(소비자소송의 지원) ①시장은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고 당해 소송이 다수의 소비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시장은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소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5장 지도, 권고 및 공표의뢰

제26조(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이 이 조례에 의한 시험·검사나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 및 권고) 시장은 사업자에게 이 조례에 의한 조사결과 소비자의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지도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공표의뢰)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도 또는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에 의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위반 내용,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련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표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9조(위원회 설치)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부의하는 공공요금 및 사용료·수수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련공무원 2인,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 단체에서 각 5인,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공공단체, 노동자단체 등에서 시장이 위촉한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⑥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안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2조(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의견청취 및 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출석시켜 설명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 및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장 보 칙

제3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26
----------	-----

발의년월일 : 1999. 10. 29.

제안자 :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외 5인

### 1. 수정이유

- 일부 조문 내용중 불합리한 조문은 수정하고 부적합한 내용은 삭제하고자함.

### 2. 주요골자

- 안 제6조(위해방지) 제2항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 안 제22조(소비자 피해처리 기한)중 “처리상황을 서면으로 소비자에게”를 “처리 상황을 서면 또는 통신으로 소비자에게”로 수정하고,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피해구제의”를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통신으로 피해구제의”로 수정함.
- 안 제30조(기능) 제5호중 “시장이 부의하는”을 “시장이 결정하거나 관여하는”으로 수정함.
- 안 제35조(세부사항) 조문을 삭제함.

##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위해방지) 제2항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소비자 피해 처리기한)중 “처리상황을 서면으로 소비자에게”를 “처리 상황을 서면 또는 통신으로 소비자에게”로 하고,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피해구제의”를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통신으로 피해구제의”로 한다.

제30조(기능) 제5호중 “시장이 부의하는”을 “시장이 결정하거나 관여하는”으로 한다.

제35조(세부사항)를 삭제하고, 제36조를 제35조로, 제37조를 제36조로 한다.

#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6조(위해방지) ①(생략)</p> <p>②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기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u>요구할 수 있다.</u></p> <p>③(생략)</p>	<p>제6조(위해방지)①(원안과 같음)</p> <p>②..... ..... ..... ..... <u>요구하여야 한다.</u></p> <p>③(원안과 같음)</p>
<p>제22조(소비자 피해 처리기한)시장이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u>처리상황을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통보</u>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2조(소비자 피해 처리기한)..... ..... ..... <u>처리상황을 서면 또는 통신으로 소비자에게</u>..... ..... ..... ..... <u>기한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통신으로 피해구제의</u>..... .....</p>
<p>제30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지문에 응한다.</p> <p>1. ~4. (생략)</p> <p>5. <u>시장이 부의하는 공공요금 및 사용료·수수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u></p> <p>6. (생략)</p>	<p>제30조(기능)..... ..... 1. ~4. (원안과 같음)</p> <p>5. <u>시장이 결정하거나 관여하는</u>..... .....</p> <p>6. (원안과 같음)</p>
<p>제35조(세부사항)위원회의 운영 및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삭 제〉</p>

원 안	수 정 안
제36조 (생략)	제35조 (원안 제36조와 같음)
제37조 (생략)	제36조 (원안 제37조와 같음)